

평창군 읍·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읍·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복지회관 실제업무담당으로 바꾸어 복지회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, 회계 및 운영에 있어 「평창군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간사 변경(안제8조)

- 읍·면 총무업무담당주사 ⇒ 읍·면 주민생활지원담당

나. 예산회계 부분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하도록 명시(안제15조)

- 복지회관 수입을 회관 관리운영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
세입·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명시.

다. 운영주체 명시 및 위탁사용료 요율을 삭제하고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 제22조 및 제34조 (붙임 참조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조치 필요없음.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.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붙임

(2) 입법예고 : 평창군 공고 제2013-741호(2013.8.9. ~2013.8.29) 결과,
특기할 사항 없음.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(4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붙임

평창군 읍·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읍·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”를 “설치하고, 효율적 운영에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위치는“별표 1””을 “위치는 “별표 1””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운영위원회”를 “운영주체 및 위원회”로 한다.

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, 제2장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운영주체) 회관은 읍·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역 실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.

제4조의2(중전의 제4조)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”를 “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강구”를 “마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”을 “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잔임기간”을 “잔임 기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총무업무담당주사

가”를 “주민생활지원담당이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규칙이”를 “규칙에서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 지역내”를 “그 밖에 지역 내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후단 중 “위탁관리시는”을 “위탁관리의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3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3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관장이외의 필요한 직원”을 “관장이외에 관리인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1개월전”을 “1개월 전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「평창군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라 회계 관리를 한다.
- ② 회관의 수입은 사용료로 한다.
- ③ 회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세입·세출예산에 편성·지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범위내에서 사용 신고수리하여야”를 “범위에서 사용신고 수리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사용신고시”를 “사용신고 시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에 해당될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용신고 수리조건이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

제17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제1

호내지”를 “제1항제1호, 제2호 또는”으로, “대하여는 이를”을 “대하여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그액은“별표 2”시설사용료기준액”을 “금액은 “별표 2” 시설 사용료 기준 액”으로, “범위이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사용료는 이를”을 “사용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호의 1에 해당될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취소한”을 “취소된”으로 한다.

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에 해당될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2조 중 “승인없이”를 “승인 없이”로, “아니된다”를 “아니 된다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 본문 중 “사용기간증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”를 “고의나 과실 로”로 한다.

제24조제3항 본문 중 “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5조제3항에 따른”으 로 한다.

제24조의2를 삭제한다.

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 은 항 제3호 중 “기타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이”를 “그 밖에 운영상의 문제가” 로 한다.

제26조 중 “지방세법, 지방재정법, 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군 재무회계규칙”을 “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평창군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을 <u>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회관의 명칭, 위치는 “<u>별표 1</u>”과 같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제2장 <u>운영위원회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신 설></p> <p>제4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장은 읍·면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위원중에서</u> 호선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설치하고, 효율적 운영에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----- 위치는 “<u>별표 1</u>”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제2장 <u>운영주체 및 위원회</u></p> <p>제4조(운영주체) <u>회관은 읍·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역 실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조의2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</u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<u>위원 중</u>----- -----</p>

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(생략)

제5조(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(생략)

2.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

3.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

제7조(위원의 해촉)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,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임무) ----- 각호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마련

3. 그 밖에 -----

제7조(위원의 해촉) ① 위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-----
----- 해당 -----
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그 밖에 -----

② -----

----- 잔임기간-----.

제8조(간사) ① -----
----- 1명-----

② 간사는 읍·면 총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
제9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1조(시설용도)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기타 지역내 필요시설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

② (생략)

제12조(관장)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, 관장은 읍·면장이 겸한다. 다만,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대표가 관장이 된다.

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,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.

제13조(관리인) ① 회관에는 관장이 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(생략)

제14조(관리계획) 회관의 효율적인

② ----- 주민생활지원담당이 ----.

제9조(회의) ① ----- 규칙에서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시설용도) ① ----- 각 호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에 지역 내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관장) ① -----
-----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-----.

② -----
----- 제13조에 따른 -----.

제13조(관리인) ① ----- 관장이 외에 관리인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관리계획) -----

운영 관리를 위하여 읍·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.

제15조(예산회계)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·임대료·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.

③ 읍·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6조(사용신고) ① (생략)

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내에서 사용 신고수리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
③·④ (생략)

⑤ 사용신고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.

제17조(신고의 취소등) ① 사용신고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

----- 1개월 전-----
-----.

제15조(예산회계) ① 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「평창군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라 회계 관리를 한다.

② 회관의 수입은 사용료로 한다.

③ 회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세입·세출예산에 편성·지출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제16조(사용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범위에서 사용신고 수리하여야 -----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 사용신고 시 -----
-----.

제17조(신고의 취소등) ① -----
----- 각 호의 어느

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신고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,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사용신고수리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

3. (생략)

4.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제1항제1호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신고의 취소, 제한,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.

제18조(사용료의 결정) ① 제5조제1호의 사용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, 그 금액은 “별표 2” 시설사용료기준액의 상·하한 각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20조(사용료의 반환)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

하나에 해당하는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사용신고 수리조건이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

3. (현행과 같음)

4. 그 밖에 -----

② 제1항제1호, 제2호 또는 -----

----- 대하여 -----.

제18조(사용료의 결정) ① -----

----- 금액
----- 금액 “별표 2” 시설 사용료 기준
액----- 범위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사용료의 반환) -----
사용료는 -----.
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3. 사용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신고수리가 취소한 때

제21조(사용료의 감면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3.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

제22조(권리양도등의 제한)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23조(손해배상) ① (생략)

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

할 -----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취소된 --

제21조(사용료의 감면) -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-----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에 -----

제22조(권리양도등의 제한) -----

----- 승인 없이

----- 아니 된다.

제23조(손해배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고의나 과실로 -----

-----.
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·④ (생략)

제24조(위탁관리) 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채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·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.

제24조의2(위탁사용료의 요율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라 연간 위탁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제25조(지도감독) ① (생략)

② 군수는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위탁관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 제15조제3항에 따른 ----
----- . -----

-----.

<삭제>

제25조(지도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 -----

-----.

1. · 2. (생략)

3. 기타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이
현저히 나타날 때

제2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
제외하고는 지방세법, 지방재정
법, 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군 재
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에 운영상의 문제가 -----

제26조(준용) -----
----- 「지방세법」, 「지
방재정법」, 「평창군 공유재산
관리 조례」 및 「평창군 재무회계
규칙」-----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
연락처	(033) 330 - 2150

관계법령

□ 지방재정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방재정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·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·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2. “세입”(歲入)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.

3. “세출”(歲出)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.

4. 생략

5. 생략

□ 지방재정법 제34조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

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

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1항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